

2016년도 제2차 전임교원 특별공개초빙 모집분야별 세부심사기준

1. 서류심사

- 가. 지원 자격 유무, 연구실적물 목록 확인, 지원 서류 등 : 적부 심사
- 심사 항목은 적·부로 판정하되,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한다.

서류심사를 합격한 지원자 전원에게 특별공개초빙위원회 심사와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를 실시함.

2. 특별공개초빙위원회 심사

- 전공심사 : 이차전지재료학분야, 곤충생태(곤충분류)분야, 임상/상담심리학 분야, 문헌정보학(정보검색)분야, 고체물리 또는 응집물질물리 분야, 분자세포생물학분야, 과학기술사분야

- 가.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의 전공일치도 : 적부 심사
- 심사항목은 적·부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적”으로 판정한 경우에 적격자로 함

나. 최근 4년 이내(2012.06.10.~2016.06.09.)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 : 50점

1) 게재학술지 수준 : 50점 × 인정률

- 자연계 : A급 50점, B급 40점, C급 30점, D급 25점
- 인문·사회계 : A급 50점, B급 47점, C급 45점, D급 43점, E급 40, F급 30점

가)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초빙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1>, <별표 2>를 적용함

- 나) 질적 심사 연구실적물은 지원자가 제출한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 중 “초빙분야별 질적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수준”에 적합한 우수 논문순으로 200%까지임
(단, NATURE, SCIENCE, CELL 논문은 제출된 연구실적물에 한해서 평가한다.)

다) 초빙분야별 질적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수준

(1) 이차전지재료학분야

- A급: SCI, SCIE,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10% 이내)
- B급: SCI, SCIE,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10% 초과 50% 이내)
- C급: SCI,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
- D급: SCIE 등재 국제학술지

(2) 곤충생태(곤충분류)분야

- A급: SCI, SCIE,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10% 이내)
- B급: SCI, SCIE,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10% 초과 50% 이내)
- C급: SCI,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
- D급: SCIE 등재 국제학술지

(3) 임상/상담심리학분야

- A급: SSCI, A&HCI, SCI, SCIE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20% 이내)
- B급: SSCI, A&HCI, SCI, SCIE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20% 초과 50% 이내)
- C급: SSCI, A&HCI, SCI 등재 국제학술지
- D급: SCIE 등재 국제학술지
- E급: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 F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G20국가 발행 국제학술지

(4) 문헌정보학(정보검색)분야

- A급: SSCI, A&HCI, SCI, SCIE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20% 이내)
- B급: SSCI, A&HCI, SCI, SCIE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20% 초과 50% 이내)
- C급: SSCI, A&HCI, SCI 등재 국제학술지
- D급: SCIE 등재 국제학술지
- E급: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 F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G20국가 발행 국제학술지

(5) 고체물리 또는 응집물질물리분야

- A급: SCI, SCIE,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10% 이내)
- B급: SCI, SCIE,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10% 초과 50% 이내)
- C급: SCI,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
- D급: SCIE 등재 국제학술지

(6) 분자세포생물학분야

- A급: SCI, SCIE,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10% 이내)
- B급: SCI, SCIE,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10% 초과 50% 이내)
- C급: SCI, SSCI, A&HCI 등재 국제학술지
- D급: SCIE 등재 국제학술지

(7) 과학기술사분야

- A급: SSCI, A&HCI, SCI, SCIE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20% 이내)
- B급: SSCI, A&HCI, SCI, SCIE 등재 국제학술지(IF 상위 20% 초과 50% 이내)
- C급: SSCI, A&HCI, SCI 등재 국제학술지
- D급: SCIE 등재 국제학술지
- E급: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 F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G20국가 발행 국제학술지

2) 논문의 질 : 25점 × 인정률(25점, 22점, 19점, 16점으로 평가)

- 평가요소는 전계열 공통으로 ①논문의 독창성, ②실험과 이론의 상응 정도, ③논문의 객관성과 충실도, ④논리적 엄밀성, ⑤결론의 실용성(창의성 및 타당성)으로 함

3) 전공일치도 : 25점 × 인정률(25점, 22점, 21점, 18점으로 평가)

다. 최근 4년 이내(2012.06.10.~2016.06.09.)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 : 10점

1) 연구실적물

- 가)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초빙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1>, <별표 2>를 적용함
- 나)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실적물

2) 초빙분야별 양적심사 평가배점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일반기준	1,000% 이상	900% 이상 ~1,000% 미만	800% 이상 ~900% 미만	700% 이상 ~800% 미만	600% 이상 ~700% 미만	600% 미만

(단,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실적 중 NATURE, SCIENCE, CELL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는 연구실적의 양적심사 점수를 10점으로 한다.)

□ 연구비 심사 : 문헌정보학(정보검색)분야

가.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의 전공일치도 : 적부 심사

- 심사항목은 적·부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과반수가 “적” 으로 판정한 경우에 적격자로 함

나. 연구사업비 질적평가 : 30점

- 연구사업비 발전가능성, 발주기관 역할 등을 고려하여 30점, 27점, 24점, 21점으로 평가

다. 연구사업비 양적평가 : 30점

구분	30점 ~ 28점	27점 ~ 25점	24점 ~ 22점	비고
인문·사회 (연 평균 금액)	4억 이상	3억 이상 ~ 4억 미만	2억 이상 ~ 3억 미만	

※ 연 평균 연구사업비 계산식

연번	전체연구비 (A)	연구기간(월) (B)	월별 연구비 (C=A/B)	인정기간(월) (D)	인정기간 내 총 연구비 E=[(A/B) x D]	4년간 평균연구비
1					E1	
2					E2	
3					E3	
4				공고일 이후 ~ 종료시점 없음	E4	
계					Esum=E1+E2+E3+E4	Esum/4 = 연 평균 연구비

□ **경력 심사 : 유학생 유치·관리 국제 산학연강화(산학협력중점)분야,
실험동물의학(산학협력중점)분야**

※ “연구실적의 질적심사, 양적심사” 를 “경력심사” 로 대체한다.

가. 학력 및 경력의 전공일치도 : 적부 심사

- 심사항목은 적·부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과반수가 “적” 으로 판정한 경우에 적격자로 함

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 : 60점

- 경력의 관련 정도 : 20점, 18점, 16점으로 평가

- 경력(업무)의 질 : 20점, 18점, 16점으로 평가

- 전공일치도 : 10점, 8점, 6점으로 평가

- 전공분야 발전가능성 : 10점, 8점, 6점으로 평가

3. 공개강의 및 세미나 : 20점

평가항목	배점		
	A	B	C
① 강의의 능숙도 및 완성도 (영어, 기타 외국어 및 한국어)	5점	4점	3점
② 준비의 충실도 및 강의의 적절성	5점	4점	3점
③ 학문적 우수성	5점	4.5점	4점
④ 독자적 연구능력 및 전공분야 기여가능성	5점	4.5점	4점

4. 면접심사

가. 면접대상자는 특별공개초빙위원회 심사 및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의 심사표를 집계하여 각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 각 1인을 제외한 심사표를 종합하여 심사결과 최고 득점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연구실적의 IF(Impact Factor) 총 점수 항목 순으로 고순위자 순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함.

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및 연구능력, 임용 후 본교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다. 심사위원 2/3가 15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별표 1>

인문·사회계 연구실적 인정 비율

(단위 : %)

게재지 저자수	SSCI, A&HCI, SCI, SCIE 등재지 (IF 상위 20%이내)	SSCI, A&HCI, SCI, SCIE 등재지 (IF 상위 20%초과 50%이내)	SSCI, A&HCI, SCI 등재지	SCIE 등재지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1인 단독	250	210	180	150	120	100
2인 공저	170(210)	120(180)	90(150)	70(120)	60(90)	60(80)
3인 공저	120(180)	90(150)	70(120)	60(90)	50(80)	40(60)
4인 공저	90(150)	70(120)	60(90)	50(80)	40(70)	30(50)
5인 공저	70(120)	60(90)	50(80)	40(70)	30(60)	25(40)
6인 공저	60(90)	50(80)	40(70)	30(60)	25(50)	20(35)
7인 공저	50(80)	40(70)	30(60)	25(50)	20(40)	15(30)
8인 이상 공저	40(70)	30(60)	25(50)	20(40)	15(30)	10(25)

* 2인 공저 이상의 ()안은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인정비율임.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별표 2>

자연계 연구실적 인정 비율

(단위 : %)

계재지 저자수	SCI, SCIE, SSCI, A&HCI 등재지 (IF 상위 10%이내)	SCI, SCIE, SSCI, A&HCI 등재지 (IF 상위 10%초과 50%이내)	SCI, SSCI, A&HCI 등재지	SCIE 등재지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1인 단독	250	200	150	120	110	100
2인 공저	170(200)	120(150)	90(120)	70(100)	60(90)	60(70)
3인 공저	120(150)	90(120)	70(100)	60(90)	50(80)	40(60)
4인 공저	90(120)	70(100)	60(90)	50(80)	40(70)	30(50)
5인 공저	70(100)	60(90)	50(80)	40(70)	30(60)	25(40)
6인 공저	60(90)	50(80)	40(70)	30(60)	25(50)	20(35)
7인 공저	50(80)	40(70)	30(60)	25(50)	20(40)	15(30)
8인 이상 공저	40(70)	30(60)	25(50)	20(40)	15(30)	10(25)

* 2인 공저 이상의 ()안은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인정비율임.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별표 3>

연구실적연수환산율산출기준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률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제4조제2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3) 다음의 연구원(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①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100%
(4)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5) 석사학위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2. 규정 제4조제3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 “	
(1) 대학(전문대학 포함)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2) 대학(전문대학 포함)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3) 대학(전문대학 포함)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 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4)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 근무경력	60%
(5)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①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50%
② 비전임교원은 상근인 경우는 100%, 비상근인 경우는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함	100%
(6)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7)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70%
(8)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 률
(9)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10) 대학(전문대학 포함)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11)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체육코치	70%
(12)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13)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3. 규정 제4조제4호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1)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졸업자로서 다음의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① 중소기업법 제2조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 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 (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70%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70%
(2)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70%
(3)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4) 대학(전문대 포함)전공분야를 다음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70%
①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병원기업체 포함)	
② 대기업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③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률
(5)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6)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의 개업기간	70%
(7) 한국해양대학, 부경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 1종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법학실무교원으로 임용되는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100%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9)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70%
(10) 수의과대학 졸업자의 동물병원 개업기간	70%
(11)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	70%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병원에서 전임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13)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70%
(1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15)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	70%
(16) 치과대학 졸업자의 치과병원 개업기간	70%